

기금관리 규정

2014. 7. 22. 제정

2018. 11. 21. 개정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금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이란 본교의 발전계획 등에 따라 적립된 연구·장학·건축·퇴직·특정목적기금 등을 통칭한다. (개정 2018.11.21.)
2. “단위기관”이란 본교의 대학원(전문·특수 대학원 포함), 대학, 학과(부), 부속기관, 부설연구기관 등 이화여자대학교 직제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을 뜻한다.

제3조(기금의 분류) 본교의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원금보존기금”이란 원금을 보존하면서 기금의 운용 수익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을 뜻한다. (개정 2018.11.21.)
2. “임의기금”이란 원금과 운용 수익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을 뜻한다. (개정 2018.11.21.)

제4조(기금 관리의 원칙) ① 기금은 기부자의 의사와 본교의 장기 발전 및 세대간 공평 배분의 원칙에 따라 그 실질 가치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8.11.21.)

② 기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경상비적 성격의 비용으로 지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기금관리계획에 의해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21.)

③ 기금은 그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되어야 한다.

[제목개정 2018.11.21.]

제2절 기금의 설치 및 관리 (개정 2018.11.21.)

제5조(기금관리위원회) 본교는 기금의 설치 및 목적별 적립·사용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기금을 설치한 단위기관이 운영위원회 또는 학사운영위원회 등을 이미 설치한 경우에는 그 위원회를 기관별 기금관리위원회(이하 “기관별 위원회”라 한다)로 볼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21.]

제6조(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와 기관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각종 기금의 설치

2. 제11조에 따른 기금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본조신설 2018.11.21.]

제7조(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기획처장, 관리처장, 대외협력처장, 기획처부처장(예산), 학교법인 이화학당 사무국장 및 총장이 위촉하는 교내 전문가 2명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1명씩 둔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8.11.21.]

제8조(기금의 설치) ① 총장은 본교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1.21.)

② 단위기관의 장은 단위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위기관의 장은 기금의 설치 목적, 명칭, 재원, 용도 등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그 설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총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단위기관의 장은 해당 기금을 설치한 후 제2항을 준용하여 총장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11.21.)

1. 기부자의 의사 등에 따라 그 설치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개정 2018.11.21.)

2. 제1호에 준하여 기금의 설치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제9조(기금의 구분 관리)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제3조의 분류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18.11.21.)

제11조(기금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기금관리계획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총장이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개정 2018.11.21.)

② 총장이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금관리계획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11.21.)

③ 제8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기금관리계획은 해당 단위기관의 장이 매 회계연도의 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수립하여 위원회 또는 기관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개정 2018.11.21.)

④ 해당 단위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금관리계획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기관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11.21.)

제12조(기금관리계획의 내용) ① 총장이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금의 기금관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

기금관리 규정

1. 매 회계연도 사업 계획에 따른 기금 적립 계획 (개정 2018.11.21.)
 2. 매 회계연도 사업 계획에 따른 기금 인출 계획
 3.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18.11.21.)
- ② 단위기관의 장이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금의 기금관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
1. 매 회계연도 사업 계획에 따른 기금 적립 계획 (개정 2018.11.21.)
 2. 매 회계연도 사업 계획에 따른 기금 인출 계획

[제목개정 2018.11.21.]

제13조(기금의 적립과 인출) 기금은 제11조에 따른 기금관리계획에 의거하여 적립하고 인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21.)

1. 기부자의 의사 등에 따라 긴급하게 기금을 적립하거나 인출하여야 할 경우
2. 사업 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금관리계획의 경미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18.11.21.)

제14조(기금의 결산) 기획처는 매 회계연도마다 본교에 설치된 기금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

부칙(2014. 7. 22.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본교에 설치된 기금은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제3조에 따라 기금의 분류를 새로 정한다.

부칙(2015. 5. 8. 개정)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1. 21. 개정)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